

정 정 신 고 (보 고)

2026년 10월 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집합투자규약

삼성퇴직연금글로벌에셋증권자투자신탁H[채권혼합-재간접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06.13

3. 정정사유 :

- 모투자신탁(삼성글로벌주식패시브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추가

- 환매주기 단축(5(6)영업일 기준가격으로 10(11)영업일에 지급 → 4(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9)영업일에 지급)

4. 정정요구 · 명령관련 여부 : 아니오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모투자신탁)	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삼성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삼성글로벌주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추 가)	②이 투자신탁은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동일) 3. 삼성글로벌주식패시브EMP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22조 (환매가)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격 및 환매방법)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__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10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1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 ④ (생략)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__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제25조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__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__ 이 일정한 날의 제8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9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__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__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현행과 동일)
제37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__투자·운용한다 · 1. (생략) 2. 제2조제2항제2호의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0이하로 한다.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__투자·운용한다 · 1. (현행과 동일) 2. 제2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0이하로 한다. 3. (현행과 동일) 4.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부칙	(신설)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모투자신탁 추가, 환매주기 단축)